

정당전쟁론에 대한 윤리적 탐구*

이 종 원

주제분류 윤리학 사회윤리

주요어 정당전쟁론, 정당성, 정당한 명분, 최후의 수단, 폭력의 악순환, 상호확증파괴, 평화의 회복

요약문

이 글의 목적은 정당전쟁론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정당전쟁론이 제시하는 윤리적 기준들을 고찰하면서, 정당전쟁론이 갖는 윤리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전쟁은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전쟁 중 발생하는 무차별적인 폭격과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전쟁 당사자들과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들도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만약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전쟁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정당전쟁론이다. 이는 전쟁을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으로 양분하고, 이 중에서 정당한 원인과 절차를 거친 전쟁만을 합법적인 전쟁으로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정당 전쟁론의 윤리 원칙은 ‘전쟁결정시 충분조건(Jus ad bellum)’과 ‘전쟁수행조건(Jus in bello)’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쟁결정시 충분조건은 언제 전쟁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다음의 7가지 윤리적 원칙이 있다. 첫째, 전쟁은 무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정당한 명분(Just Cause)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전쟁은 최후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 셋째, 전쟁에 대한 합법적인 결정권은 공인된 정부집단(legitimate Authority)으로 제한한다. 넷째,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s)여야 한다. 다섯째, 승리에 대한 확실한 가능성(Reasonable Hope of Success)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비례의 규칙(Proportionality), 즉 예상되는 비용이나 손실이 전쟁으로 얻는 이득과 비교해서 타당해야 한다. 일곱째, 전쟁 목적이 제한되어야 한다(Limited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Objectives).

전쟁수행조건은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 원칙으로 차별성과 비례성의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무력행사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없거나 최소화되도록 전투요원과 비무장의 민간인은 공격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전쟁수단과 목적사이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전쟁론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첫째, 전쟁을 제한하고 억제하려는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종종 전쟁을 일으키는 이데올로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둘째,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상이 자행되면서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더 큰 악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셋째, 원자 폭탄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등장은 정당전쟁론의 한계를 넘어선다. 전멸의 위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날은 어떤 전쟁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전쟁도 정당전쟁론의 규칙에 부합한 전쟁은 없었다는 점에서 정당전쟁론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전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고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대국에 의한 이기적 영토 확장과 자국 중심의 지배력 강화 보다는 지구촌 공동체가 상생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서로 관용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온전한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시대는 없었다. 전쟁은 발발할 때마다 참혹한 피해와 상처를 남긴 채 인간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들었다. 전쟁으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쟁에 참가하는 전투원의 희생뿐 아니라 전쟁과는 무관한 민간인들도 피해자가 된다. 또한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한 산업시설과 주변환경의 파괴는 가공할 피해를 남긴다. 패전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승전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쟁을 통해 득보다도 실이 더 많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된 삶의 환경을 복구하고, 황폐해진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 끝에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심사숙고한다면 전쟁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도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과 같은 끔찍한 전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이라크에는 지금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보고, 전쟁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그 정치적 의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¹⁾ 전쟁이 정치적인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경우 전쟁과 연관된 수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전쟁준비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 뿐 아니라 전쟁과정 중에 발생하는 무차별적인 폭격과 살상, 방화, 파괴 등은 전쟁 당사자들의 희생 뿐 아니라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들까지도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1)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한층 더 규모가 큰 전투에 불과하다. 전쟁 당사자 각각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물리치고, 상대방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 전쟁이란 무력행위이고, 무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계란 없다.”고 정의하였다. Von Clausewitz, *On War, in War, Politics and Power*, 63-72쪽. 리차드 와썌스트롬, 「전쟁의 도덕성: 예비적 고찰」, 레이첼스, 『사회윤리의 제문제』, 357쪽 재인용.

그런데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만약 전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전쟁의 규모 또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의도로 정당전쟁론(Just War Theory)이 제시되어 전쟁의 결정과 수행과정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현실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정당한 명분이 없는 전쟁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었다. 비록 명목상이더라도 전쟁에는 타당한 명분이 선행되어야 한다.²⁾

이로 볼 때 정당전쟁론은 전쟁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쟁 자체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당전쟁론은 그 의도한 바대로 전쟁 자체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본 소고에서는 전쟁 자체가 갖는 도덕적 문제점들을 주목하면서 정당전쟁론의 역사와 정당전쟁론이 제시하는 윤리적 기준들을 고찰하면서, 정당전쟁론의 윤리적 한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정당전쟁론을 넘어서는 보다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전쟁의 도덕성

수많은 시체들, 통곡하는 미망인들과 고아들, 굶주린 사람들, 불탄 마을, 끊어진 다리와 산업시설물들, 파괴되어 폐허로 변해 버린 도시 등과 같은 모습들은 전쟁이 빚은 참혹한 결과들이다. 전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파괴와 상처와 분노를 남긴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을 부도덕하다(immoral)고 주장한다.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은 부도덕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은 금지되어

2) 미국이 걸프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이나 이라크전에서 전쟁 전에 그에 합당한 국제적인 지지여론을 환기시키는 경우도 바로 이러한 도덕적 문제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에는 살인, 폭행, 고문, 강간, 절도, 거짓말 등이 난무하는데, 이러한 부도덕성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은 폭력과 전쟁은 결코 평화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주의가 지닌 근본적 문제점은 너무 이상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적국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평화주의자들은 현실적으로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평화주의자들은 자유와 평화를 유린하는 악한 현실을 그대로 방관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전쟁의 현실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자들은 전쟁은 도덕과 무관하다(nonmoral)고 주장한다. 즉 전쟁의 현실에서 도덕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³⁾

전쟁이 도덕성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다음 두 가지 근거로서 제시된다.

첫째, 한 사회나 국가 안에서 지켜야 할 도덕이 국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은 상호간 자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를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⁴⁾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는 일말의 도덕성에 대한 고민 없이 자국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래키는 비록 세계정부라는 것이 없고 국제적으로 갈등을

3) “도덕성과 관계없다”는 말은 nonmoral과 amoral이 있는데, 포션은 이 양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amoral은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인식을 할 수 없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반면 nonmoral은 도덕성과 전혀 관계없이 판단되는 행동개념이다. 실례로 국가적·개인적 수준에서 도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국제적 수준에서 도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즉, 국제적 수준에서는 도덕성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nonmoral인 것이다. N. Fotion,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전쟁론」, Andrew Valls ed,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Theories and Cas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김한식, 박균열,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4), 60쪽 참고.

4) 같은책, 61쪽.

조정하고 분쟁을 화해로 이끄는 실제적인 기구가 빈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무대에서도 따라야 할 윤리가 있다고 주장한다.⁵⁾ 만약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게 되고 그 결과 안보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따라야 할 윤리적 규범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 온 국제적 도덕과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⁶⁾ 이들 기준들은 국가 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둘째,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도덕적인 고려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교전 중인 국가는 전쟁방법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상당한 적군을 죽이거나, 구명보트에 타고 있는 적국의 선원들을 사살하거나, 포로들을 죽이거나, 민간인들을 공격하거나, 적국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다른 유사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교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⁷⁾

그러나 아무리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따라야 할 분명한 도덕적 규칙이나 규범은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규칙이 없다면 전쟁은 더욱 잔인하게 되고 대량학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에는 분명한 규약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약은 정당전쟁론으로 발전되었다.

5) Douglas P. Lackey, *The Ethics of War and Peace* (Prentice Hall / Pearson Education, 1988) 최유신, 『전쟁과 평화의 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23쪽. 래키는 이에 대한 실례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으로 인해 동맹국과 세계로부터 고립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북한이나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야기되는 국제적 안보 위협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6) 히틀러조차도 2차 대전 중에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협정을 지켰다. Douglas P. Lackey, 『전쟁과 평화의 윤리』, 25쪽.

7) N. Fotion,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전쟁론」, 61쪽.

3. 정당전쟁론의 역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시도는 정당전쟁론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전쟁을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으로 양분하고, 정당한 원인과 절차를 거친 전쟁만을 합법적인 전쟁으로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이는 전쟁의 엄격한 기준으로서 전쟁을 제한하여 평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⁸⁾

그리스 시대에 플라톤은 정당한 전쟁, 즉 자위전쟁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자위 군비의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⁹⁾ 플라톤에게 있어서 정당한 전쟁의 목적은 평화의 회복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평화의 도덕적 가치는 개인과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전쟁은 평화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¹⁰⁾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는 기독교가 국교화된 로마제국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정당한 전쟁의 윤리적 원칙을 체계화시켰다.¹¹⁾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로마제국이 이교도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참전하도록 현실적으로 독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직면해서 전쟁은 악에 대한 승

8) 신원하, 「기독교 전쟁이론과 평화신학」,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04년 8월, 71쪽.

9) 자위전쟁(自衛戰爭, self-defense war)는 타국으로부터 부당한 무력침공을 받은 국가가 자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어 전쟁이다. 1차 세계대전 후 국제법으로 모든 전쟁을 위법화하였으나, 자위전쟁만은 인정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위권을 한 국가로부터 집단적인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게 되었다. 정당전쟁론은 자위전쟁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게 개념이다.

10) 박인성, 「전쟁의 도덕성: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41집, 2006년 여름, 60쪽 참고.

11) 전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는 암브로스(St. Ambrose)에 의해 처음으로 형성되었고,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었다. 이들에게서 군복무에 대한 어떤 주저함도 찾기 어려운데,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것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었다. R. H. Bainton,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89-90쪽.

리를 위해 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¹²⁾ 전쟁은 일종의 필요악으로서, 합법적 권위에 의한 전쟁은 불가피하기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당한 명분의 원칙과 적법한 권한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전쟁이라면 교회는 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악한 집단을 징벌하기 위해 전쟁을 할지라도 그 악한 집단을 개선시키고 악에서 구하려는 사랑의 동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¹³⁾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동기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그는 전쟁은 단지 필요악으로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그 수단으로 사람들을 필요악으로부터 구하고 그들을 평화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만 전쟁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⁵⁾ 따라서 평화는 전쟁의 구실로 추구되어서는 안 되며, 평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쟁이 수행되어야 하며, 전쟁 과정에서도 평화의 정신을 소중히 간직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⁶⁾ 전쟁은 혐오스러운 것임에도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는 필

12) Ben Lowe, *Imaging Peace*,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17쪽.

13)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쟁으로 얻은 평화는 승자와 패자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불가피하게 적을 살해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인 만큼 승자도 패자와 화해하고 피차 평화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사문, 「정당전쟁론에 대한 성서적 해석」,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1991년 4월, 45쪽.

14)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전쟁을 통한 폭력사용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만 확보된다. 단순한 자기 보호나 이웃보호를 위한 폭력사용은 거부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폭력만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박인성, 「전쟁의 도덕성: 이라크전쟁과 연관하여」, 62쪽.

15)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어떤 수단들은 더 큰 선을 성취하게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비전투원들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하게 불행한 부작용(side effect)인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의 도시는 항상 파멸된 채 남겨지게 될 것이며, 영원한 투쟁의 한 부분으로서 악에 대항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사람들 가운데 전쟁은 영속적인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Ben Lowe, *Imaging Peace*, 16쪽.

16) 아우구스티누스는 군인들은 명성이나 영광을 위해서나 보복을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군사들과 지도자들에게 적에 대하여 신실할

연적이라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정당한 전쟁을 옹호하였다.

T. 아퀴나스는 기독교의 교리와 전쟁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의 질서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¹⁷⁾ 아퀴나스는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에서 정당전쟁론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시켰다. 첫째, 어떤 전쟁이 허용가능한가 둘째, 성직자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가 셋째, 전투원들은 속임수를 사용할 수 있는가 넷째, 전쟁은 축제일에도 수행될 수 있는가 등이다.¹⁸⁾

근세 초에 F. 수아레스, 그로티우스(Hugo Grotius) 등은 정당 전쟁론을 더욱 세속적으로 구체화시켜 발전시켰는데, 그로티우스는 정당전쟁의 전통을 도덕 규칙에서 적극적인 국제법으로 변화시켰다.¹⁹⁾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주권국가의 세력균형으로 이루어진 유럽 국가의 성립과 함께 국가를 초월하여 정당한 판정자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정당전쟁론은 한낱 관념론에 불과한 것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또한 전쟁 당국 어느 쪽이든지 간단하게 정당하다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판별할 수 없다고 하는 무차별 전쟁관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위법화하고 금지하려는 요구가 생

것과 패배자들에게 긍휼(mercy)을 베풀 것을 권고했다. Paul Christopher, *The Ethics of War and Peace*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94), 47쪽.

17)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입장은 루터와 칼빈을 거쳐 대부분 주류 개신교단과 로마 가톨릭 교회로 이어졌고 현대에 폴 램지, 제임스 터너 존슨에게 계승되었다. J. T. Johnson, *Can Modern War Be Just?*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4), 램지는 기독교 안에서 발전된 정당전쟁론은 폭력이나 공격 또는 폭군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보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군사력 사용의 합법성을 허용할 근거를 제공하게 될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러한 강제력이 제한되어야 함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Paul Ramsey, *The Just War* (Bos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144-145쪽.

18) Ben Lowe, *Imaging Peace*, 32쪽.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정부는 그 주요 목적이 시민들의 공적인 복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선(a positive good)이었다.

19) Paul Christopher, *The Ethics of War and Peace*, 69쪽.

겨나면서 정당전쟁론이 다시금 논의의 초점이 되었으며,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4. 정당전쟁론의 윤리적 원칙

정당전쟁론은 자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 의한 폭력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전쟁에서의 폭력사용도 옹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당전쟁론의 윤리 원칙은 ‘전쟁결정시 충분조건(Jus ad bellum - 전쟁 전의 정의의 규칙)’과 ‘전쟁수행조건(Jus in bello - 전쟁 중의 정의의 규칙)’으로 크게 구분된다.²⁰⁾

1) 언제 전쟁이 가능한가(Jus ad Bellum)

이 원칙은 전쟁에 호소하는 것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20) Jus ad bellum(when to fight)은 언제 전쟁이 허용되지를 결정하는 반면, Jus in bello(how to fight)는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다. Jus ad bellum은 정치지도자들에게 적용된다면, Jus in bello는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군인들이나 지휘관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다. Douglas P. Lackey, “Just War Theory” Larry May, *Applied Ethic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4), 201쪽. 터너 존슨은 정당한 전쟁의 주요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jus ad bellum 전쟁 개전시의 정의	jus in bello 전쟁 수행상의 정의
just cause 정당한 명분	proportionality 비례성 (악을 능가하는 선이라는 의미에서)
right authority 합법적인 권위	
right intent 올바른 의도	
proportionality 비례성 (전체적인 선과 악의 예상과 연관하여)	discrimination, or noncombatant protection 차별성 또는 비전투원의 보호
the end of peace 평화라는 목적	
last resort 최후의 수단	

J. T. Johnson, *Can Modern War Be Just?*, 18쪽.

① 정당한 명분(Just Cause)

전쟁은 무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개전의 합당한 사유, 즉 그에 합당한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²¹⁾ 정당한 명분에서 중요한 윤리적 문제는 생존이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에 대항해서 국가나 집단의 생존권 유지를 위해 싸우는 것은 불가피하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전쟁에서 인정될 수 있는 명분은 첫째, 부당한 외부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국이나 다른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²²⁾ 둘째, 권리의 회복 즉 이전의 부당한 침략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였거나 대항하였지만 패배하여 상실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전쟁 셋째, 다른 국가에서 정부의 권력남용으로 기본 인권이 침해될 때 이를 막기 위한 전쟁 넷째, 부당한 침략자를 처벌하기 위한 전쟁 등이다.²³⁾

정당한 명분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논점은 선제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상대국으로부터 명백한 위협이 있고, 그 위협이나 공격이 자국의 생존에 치명적인 경우라면 선제공격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때 상대국의 위협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을 넘어서 자국의 권리와 평화가 침해당할 것을 예상해서 선제공격을 먼저 감행하는 예방적 공격(preventive strike)이 되어서는 안 된다.²⁴⁾ 예방적 공격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

- 21) 정당한 명분이라는 기준은 올바른 명분(righteous cause) 또는 정당화(justification) 또는 매우 충분한 이유(very good reasons)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N. Fotion,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전쟁론」, 70쪽.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전쟁의 정당한 명분은 평화였다. 그는 정치학(politics, 1333A)에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따라서 약탈은 전쟁의 타당한 명분으로서 항상 거부되었다. Douglas P. Lackey, “Just War Theory”, 204쪽.
- 22) NATO가 1999년 코소보 사태로 인해 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를 공격하였을 때 호소했던 기준이다. N. Fotion,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전쟁론」, 71쪽. 또한 이라크에 의한 쿠웨이트침공으로 치러진 1차 걸프전도 이에 해당된다.
- 23) Jeff McMahan, 「전쟁과 평화」, P. Singer, 『응용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267-268쪽.
- 24) N. Fotion,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전쟁론」, 71쪽

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므로 정당한 명분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²⁵⁾

② 최후의 수단(Last Resort)

전쟁을 통한 무력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쟁 이전에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평화로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교적 협상이나 경제적 제재 등과 같은 가시적이고도 평화적 수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도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③ 합법적 권위(legitimate Authority)

전쟁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결정권은 공인된 정부집단으로 제한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인에 의한 강제력의 사용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²⁶⁾ 정당방위든 타국에 대한 침략방어이든, 전쟁을 수행할 자격은 오직 공적으로 인정된 합법적 권위에게만 주어진다.²⁷⁾ 따라서 합법적인

참고.

25) 이스라엘에 의해 시작된 6일 전쟁(1967년)이 예방적 자기방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왈쯔(M. Walzer)는 시나이반도에 주둔해 있던 유엔평화유지군이 이집트의 요구에 따라 철수하자, 이집트가 티란 해협(straits of tiran)을 봉쇄하여 이스라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래키는 이집트의 티란 해협봉쇄는 전쟁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예방적 자기방어가 아니라 정당방위로 해석하였다. Douglas P. Lackey, *The Ethics of War and Peace*, 92-93쪽. 그러나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점, 2만 명이나 되는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티란 해협의 봉쇄가 심각하였음에도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6일 전쟁은 예방적 공격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많다. 또한 전쟁결과 이스라엘은 4배나 더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당한 전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있다.

26) Douglas P. Lackey, "Just War Theory", 201쪽.

27) 토마스 아퀴나스는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당사자에 의해 치러지는 전쟁은 공공

국가만이 전쟁을 선포하고 교전을 승인했을 때에만 무력행사가 가능하다. 자칭 해방군이나 시민군 등과 같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한 전투행위는 해당집단이나 개인의 이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④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s)

전쟁은 올바른 의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즉 정의로운 전쟁은 의(義, right)를 위해 싸우는 의를 위한 전쟁이 되어야 한다.²⁸⁾ 전쟁의 의도는 상대방에 대한 복수와 파멸이 아니라 파괴되고 왜곡된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며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좋은 의도는 측정하기가 어렵다. 전쟁의 의도성은 전쟁이 원만히 진행된 이후이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확실한 성공 가능성(Reasonable Hope of Success)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실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목적이 숭고하고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전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승리가 불투명하다면 자칫 전쟁은 무모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문제의 해결과 무력대결에서의 승리가 담보되어야 한다.

⑥ 비례(균형)의 규칙(Proportionality)

비례의 규칙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예상되는 비용이나 손실이 전쟁의 결과 얻는 이득과 비교해서 타당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전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전쟁으로 초래되는 해악이나 소실을 능가하지 못한다면 정

복리를 도모하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합법적인 권위의 원칙을 다른 원칙 보다 더 강조했다. 박인성, 「전쟁의 도덕성: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64쪽.

28) Douglas P. Lackey, "Just War Theory", 203쪽.

당한 조건이 성립될 수 없기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정당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결과 발생하게 될 해악을 도덕적으로 정당화시키지 못하면 정당성은 상실되게 된다.

그런데 균형의 규칙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첫째, 전쟁으로 초래되는 해악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해악을 가치의 상실, 즉 죽음, 상해, 신체적 혹은 심리적 고통, 비참한 가난 등으로 해석할 경우 전쟁 자체가 지닌 파괴성을 감안할 때 그 어떤 정당한 명분에 의한 전쟁조차 정의롭지 못하게 된다. 둘째, 전쟁의 예상 비용도 가늠할 수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전쟁이 예상대로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장기전으로 전개될 경우 전쟁비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쟁을 통해 얻게 이익이 해악보다 적은 경우를 부정의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너무 엄격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규칙을 적용할 경우 전쟁의 예상비용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감안하여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는 점을 일깨울 뿐이다.

⑦ 전쟁목적의 제한(Limited Objectives)

전쟁목적이 제한되어야 한다. 전쟁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해당침략행위와 특정불법행위의 저지를 통한 평화의 수호에 국한되어야 한다. 비록 침략을 받았다고 하여도 침략국전체를 초토화하거나 국민을 몰살시키는 무제한적인 보복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2) 전쟁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Jus in Bello)

이 규칙들은 전쟁 중에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를 규정한다.

① 차별성(Discrimination)

차별성의 원칙은 무력행사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없거나 최소화하려는 원칙으로서 비무장의 민간인은 반드시 공격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 원칙은 노인, 민간여성 및 아동은 전투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구별함으로써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군사력에 의해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적국이나 적대집단의 군사시설과 전투요원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전투행위와는 무관한 비무장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병원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공격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차별성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실제 전투에 투입되지 않는 군중장교나 의료요원들을 포함시켜야 할지, 또는 군사장비 및 양식을 직접 생산하고 조달하는 인부들이나 전선에 각종 전투장비와 양식을 운반하는데 도움을 주는 철도 종업원들을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이런 경우 개인 및 집단들의 전쟁 참여 정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²⁹⁾

② 비례성(Proportionality)

수단과 목적사이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평화의 수호 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만큼의 무력사용만이 정당한 무력의 행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갑사단 하나로 성공 가능한 작전에 핵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그 실효가 보장되지 않고 작전수행과 상관없는 대규모 파괴행위나 살상행위는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비례성의 원칙에는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최소폭력의 조건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사용되는 폭력의 총계는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³⁰⁾ 따라서 전쟁에서 불필요한 파괴나 살상은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비례의 조건이다. 전쟁에서 어떤 행위가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쁜 결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결과를 능가하거나 그보다 커서는 안 된다.³¹⁾ 이 원칙은

29) N. Fotion,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전쟁론」, 77쪽.

30) Jeff McMahan, 「전쟁과 평화」, 268쪽.

31) 같은책.

전투 중 부상한 적군을 살려둠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부상당한 적군을 죽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전쟁포로에게 위해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포로들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것은 무장한 적군을 죽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³²⁾

이러한 전쟁 수행상의 원칙들은 전쟁의 참사를 줄이고, 전쟁의 비도덕성을 제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또한 불가피한 전쟁 상황에서 전투원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전쟁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고 억제하는데 강조점이 있다. 그리하여 피해규모를 줄이고, 대량살상을 줄이고,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5. 정당전쟁론의 한계

위에서 제시된 정당전쟁론의 각 원칙은 어떤 원칙이 다른 원칙에 대해 우선순위를 갖거나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럼에도 정당한 명분과 최후의 수단이 다른 원칙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베인튼(R. H. Bainton)은 정당 전쟁론의 우선적인 목적이 전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있기에 정의로운 전쟁(Just War)으로 불렸을 뿐이지, 사실 정당한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평화의 회복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³⁾ 그런데 베인튼의 주장대로 정당전쟁론이 과연 정당하고 정의로운 전쟁인가 질문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정당전쟁론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이데올로기로 악용될 가능성

정당전쟁론은 전쟁을 제한하고 억제하려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종종 전

32) N. Fotion,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전쟁론」, 76쪽.

33) R. H. Bainton,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New York: Abingdon Press, 1960), 38쪽.

쟁을 일으키는 이데올로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힘으로 단번에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당전쟁론은 역으로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으로 악용된다.³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했던 케글리와 레이몬드스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영구적 평화정착을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를 정교하게 정착시키는 것이 정당한 전쟁(Just War)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³⁵⁾ 따라서 전쟁의 정당성을 통해 전쟁에서의 승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정의로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들이 더욱 우선시되어야 한다.³⁶⁾ 정의로운 평화는 전쟁의 잠재성을 근본에서부터 없애는 귀중한 자원이 된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국제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씨앗이 뿌리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34) 실제로 1991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2003년 이라크전쟁 등과 같은 경우 미국은 정당전쟁론에 근거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전쟁들은 정당전쟁론이 악용된 대표적 사례들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전쟁들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강행하여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35) C. W. Kegley and G. A. Raymond, "From Just War to Just Peace", A. F. Lang & A. C. Peirce & J. H. Rosenthal ed, *Ethics and the Future of Conflict - Lessons from the 1900s* (New Jersey: Upper Saddle River, 2004), 48쪽.

36) 그렌 스타트는 정의로운 평화조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 무기 개발과 실험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포기함으로써 상대 국가에게 무기 개발유혹을 부추기지 않고 신뢰를 얻도록 하라. 둘째, 상대 국가와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라. 셋째, 상호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되 특히 약소국을 더 배려해야 한다. 넷째, 군비경쟁이나 전쟁의 악순환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실제적 평화조성방법을 추구하는데 함께 동참해야 한다. 우선 상호 무기를 감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섯째, 상대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고 제시해가야 한다. 여섯째, 상호 국민들에게 현실을 바로 알리고 평화 조성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신원하, 「기독교 전쟁이론과 평화신학」, 79쪽.

2) 폭력의 악순환

정당 전쟁론의 문제는 악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더 큰 악을 생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전쟁에서의 진정한 악은 폭력을 사랑하는 것이요 잔학한 복수심과 격렬하고 식을 줄 모르는 적대감, 난폭한 저항,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욕과 같은 것들이라고 지적하였다.³⁷⁾ 이러한 악은 고귀한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더욱 잔인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엘룰은 폭력을 다섯 가지 특성으로 분석하였다.³⁸⁾ 첫째, 폭력은 계속성이 있다. 일단 폭력에서 출발하면 거기에서 떨어질 수 없다. 폭력은 정치적, 사회적 혹은 인간적 상황들을 단순화시키는 습관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한번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결코 끊을 수 없게 된다. 둘째, 상호성이다. 폭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보복을 특성으로 하는 상호성을 띤다. 셋째, 폭력의 동일성이다. 폭력은 어느 것이나 다른 폭력과 동일한 것이다. 그럼 점에서 정당한 폭력과 부당한 폭력, 해방시키는 폭력과 예측시키는 폭력 사이에 구별이 불가능하게 된다. 폭력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인식이다. 넷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흔히 전쟁은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폭력은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다섯째,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은 항상 폭력과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쓴다. 결국 폭력은 더 많은 폭력을 야기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전쟁은 최후에 선택되는 폭력이다. 의도와 목적에 상관없이 일단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전쟁 과정 중에 잔인한 폭력과 살해가 일어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폭력의 악순환은 시작된다. 비록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라도 폭력을 막기 위해 더 큰 폭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37) Augustine, *Contra faustum Manichaum*, Ben Lowe, *Imaging Peace*, 16쪽 재인용.

38) 자크 엘룰, 최종고, 『폭력 기독교적 반성과 전망』, 111쪽. 이장형, 「전쟁과 폭력에 대한 기독교 현실주의적 이해」, 대학복음화학회, 『대학과 복음』 10집, 2004년 12월, 254-257쪽. 재인용.

따라서 폭력이라는 수단은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결과주의적 견해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은 항상 이득이나 장점보다 더 많은 해악과 피해를 끼쳤다. 앤스콤은 인간의 자만심, 악의 및 잔인성은 매우 흔한 것이어서 전쟁에서는 대부분 양편 모두가 사악하다고 지적하였다.³⁹⁾ 전쟁은 합법적으로 생명을 살해하는 잔인한 행위이기에 처음에는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전쟁에 참가하지만 전쟁이 진행될수록 더 폭력적이며 잔인하게 변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전쟁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패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승자의 입장에서도 전쟁으로 얻는 이익 보다는 해악이 더 많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워드 진은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한 후에 전쟁에는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이 있다는 다소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인류의 어떤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도 전쟁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⁴⁰⁾ 참전 용사들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점점 비인간화되고 잔인하게 되어 인간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전쟁 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⁴¹⁾

4) 무고한 사람들의 겪는 피해

정당전쟁론의 근본목적은 악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강제력이 전쟁에 개입될 경우 무력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와 살상이 일어나게 된다. 와썬스트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당하다는 근거 하에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전쟁에는 거의 불가피하다.⁴²⁾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

39) G. E. M 앤스콤, 「전쟁과 살인」, 335쪽.

40) Howard Zinn, *On War*, 유강은, 『전쟁에 반대한다』 (서울: 이후, 2003), 216쪽.

41)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플래툰]은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고 비극적으로 변화시키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42) 리처드 와썬스트롬, 「전쟁의 도덕성: 예비적 고찰」, J. Rachels, *Moral Problems*,

용되는 폭력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많다.

무고한 사람의 죽음이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무분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초래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사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앤스콤은 전쟁 중에 일어나는 가장 사악한 일은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살해인데, 때로는 이를 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으며 심지어는 명예로운 일인 경우조차 있다고 지적하였다.⁴³⁾ 이러한 전쟁의 비도덕성을 주목했던 에라스무스는 전쟁을 ‘그 보다 더 사악하고, 그 보다 더 비참하고, 그보다 더 많은 파괴를 가져오고, 그보다 더 교묘하게 집요하고, 그보다 더 역겨운 것은 없다’고 표현했다.⁴⁴⁾

5) 무차별 대량학살 무기의 등장

폴 램지는 전쟁은 도덕적일 수 있으며, 때로는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이를 반박하는 모든 논증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⁴⁵⁾ 그러나 램지의 주장을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은 수소 폭탄과 원자 폭탄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발달로 인해서 전쟁의 피해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그리고 중성자탄과 생화학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발달은 전쟁에 대한 관점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인 수정하게 만들었다.⁴⁶⁾ 핵전쟁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기존

황경식 외, 『사회윤리의 제문제』 (서울: 서광사, 1984), 355쪽.

43) G. E. M 앤스콤, 「전쟁과 살인」, J. Rachels, *Moral Problems*, 황경식 외, 『사회윤리의 제문제』 (서울: 서광사, 1984), 335쪽.

44) Howard Zinn, *On War*, 유강은, 『전쟁에 반대한다』, 219쪽.

45) 리처드 와썬스트롬, 「전쟁의 도덕성: 예비적 고찰」, 354쪽.

46) 20세기 초 헤이그와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전쟁에 관한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더욱 통제 불가능하고 치명적으로 되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의 독가스 사용, 2차 세계대전에서의 도시 폭격과 원자폭탄 투하, 베트남전에서의 네이팜탄 사용, 1980년대 초 이란-이라크 전 당시 생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 Howard Zinn, *On War*, 유강은, 『전쟁에 반대한다』, 221쪽.

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던 전쟁과는 피해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볼 때 정당전쟁론의 한계를 넘어선다. 핵무기는 그 성격상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이어서 민간인과 군인,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을 구별하여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전쟁론의 현실적 한계를 넘어선다.

스테르바(J. P. Sterba)는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함께 희생당하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은 명백하게 비도덕적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만약 그러한 살해가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라거나 더 큰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막아야 할 악과 보호해야 할 선은 예상되는 악의 결과나 의도된 악한 수단들 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이러한 정당화를 전제로 스테르바는 도덕적 제한이 뒤따르는 핵방어 정책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오직 제한된 핵 보복의 형태만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현재 상태 하에서 핵억제는 핵보복의 위협이나 엄포 없이 성취되어야 한다. 셋째, 첫 공격을 막는데 필연적일 때에만 제한된 핵 보복의 위협이나 대량 핵 보복의 엄포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⁴⁸⁾ 스테르바는 핵무기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막아야 할 악과 보호해야 할 선은 예상되는 악의 결과나 의도된 악한 수단들 보다 커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핵무기의 특성상 막아야 할 악과 보호해야 할 선보다 더 큰 악과 더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간에는 의도적이건, 우발적이건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항상 있다. 만약의 경우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상당량의 핵무기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그 피해대상은 무제한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상호파멸은 불가피하게 된다. 군사시설만 하더라도 한 곳에 모여

47) J. P. Sterba, "Between MAD and Counterforce" K. Kipnis & D. T. Meyers, *Political Realism & International Morality* (Boulder: Westview press, 1987), 123쪽.

48) 같은책, 134쪽.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흩어져 있으므로 많은 핵무기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된다.⁴⁹⁾ 따라서 핵전쟁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요 패자일 뿐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핵전쟁은 상호간의 파괴를 입증하는 ‘미친’(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쟁임에 틀림이 없다.⁵⁰⁾ 따라서 전멸의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 어떤 전쟁도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6. 나오는 글 - 정당전쟁론을 넘어서

위에서 정당전쟁론의 이론적 근거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전쟁결정시 충분조건(Jus ad bellum)과 전쟁수행조건(Jus in bello)의 두 가지 큰 틀로 구분하여 정당전쟁론이 제시하는 윤리적 기준들을 고찰하면서 정당전쟁론의 윤리적 한계를 고찰하여 보았다.

만약 정당전쟁론의 이러한 기준들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전쟁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정당전쟁론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미국에 의한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도 모두 정당전쟁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만 정당전쟁론의 규칙을 온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로 볼 때 정당전쟁론은 원래 의도를 벗어나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고 전쟁을 합리화하는데 이용될 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쟁을 정당화시키

49) 신원하, 「기독교 전쟁이론과 평화신학」, 76쪽.

50) 파렐은 홀로코스트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투하 사건을 함께 연결시키면서 ‘고치기 위해 죽이고, 살리기 위해서 학살하는’(killing in order to heal and slaying to make alive)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호간에 확실하게 파괴하는 미친(MAD) 세상을 새로운 윤리적 이상으로 극복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Darrell J. Fasching, *The Ethical Challenge of Auschwitz and Hiroshima*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82-120쪽.

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당전쟁론이 부과하는 규칙들은 오늘날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가치가 되어 버렸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로운 전쟁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들에게 삶의 자유와 회복을 보장하는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도 현실 속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만약 전쟁의 진정한 목적이 평화의 회복에 있다고 한다면, 전쟁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더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전쟁론을 넘어서야 한다. 자국중심의 집단적 이기심을 버리고 지구촌 공동체의 연대성을 회복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과 전쟁을 통해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평화의 적극적 의미를 실현시키려는 가치관에서부터 시작된다.⁵¹⁾ 강대국에 의한 이기주의적 영토 확장과 자국 중심의 지배력 강화 보다는 상호 공존을 위한 가치관의 전환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들이 요청된다.⁵²⁾

온전한 의미에서의 평화는 단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소극적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요인들까지 없어진 상태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지구촌 공동체가 서로 관용하며 공존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전쟁이 없는 온전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숭실대학교)

51) 이삼열,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서울: 햇빛출판사, 1991), 42-43쪽 참고.
52) 이종원, 「테러리즘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22집, 2007년 11월, 223쪽.

참고문헌

- 강사문, 「정당전쟁론에 대한 성서적 해석」,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1991년 4월.
- 박인성, 「전쟁의 도덕성: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41집, 2006년 여름.
- 신원하, 「기독교 전쟁이론과 평화신학」,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04년 8월.
- 이삼열,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서울: 햇빛출판사, 1991.
- 이종원, 「테러리즘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22집, 2007년 11월.
- 이장형, 「전쟁과 폭력에 대한 기독교 현실주의적 이해」, 대학복음화학회, 『대학과 복음』 10집, 2004년 12월.
- Bainton, R. H.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New York: Abingdon Press, 1960.
- Christopher, Paul. *The Ethics of War and Peace*,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94.
- Mcmahan, Jeff. 「전쟁과 평화」, Singer, P. 『응용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 Fasching, Darrell J. *The Ethical Challenge of Auschwitz and Hiroshima*,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 Fotion, N.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전쟁론」, Valls Andrew ed,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Theories and Cas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김한식, 박균열,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 Johnson, J. T. *Can Modern War Be Just?*, New Haven: Yale

- University, 1984.
- Kegley C. W. and Raymond, G. A. “From Just War to Just Peace”, Lang A. F. & Peirce A. C. & Rosenthal J. H. ed, *Ethics and the Future of Conflict - Lessons from the 1900s*, New Jersey: Upper Saddle River, 2004.
- Lackey, Douglas P. *The Ethics of War and Peace*, Prentice Hall / Pearson Education, 1988, (최유신, 『전쟁과 평화의 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 _____. “Just War Theory”, Larry May, *Applied Ethic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4.
- Lowe, Ben. *Imaging Peace*,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 Ramsey, Paul. *The Just War*, Bos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 Rachels, J. *Moral Problems* (황경식 외, 『사회윤리의 제문제』, 서울: 서광사, 1984.
- Sterba, J. P. “Between MAD and Counterforce”, Kipnis K. & Meyers, D. T. *Political Realism & International Morality*, Boulder: Westview press, 1987.
- Zinn, Howard. *On War* (유강은, 『전쟁에 반대한다』, 서울: 이후, 2003).

An Ethical Survey of The Just War Theory

Jong Won, Lee

This article is to criticize the ethical principles of the Just War Theory, surveying the origins and history of a Just War, and then to survey ethical problems in applying just war theory.

If war is inevitable, then the Just War Theory's purpose is to minimize the victims and destruction from war and limit the scale and scope of war. Therefore this not only distinguishes the Just War and the unjust war from each other, but also allows only a war with a legitimate cause and proper course to take place.

The principles of a Just War are divided into two main elements; Jus ad bellum and Jus in Bello. According to Jus ad bellum; 1) There must be a just cause for war. 2) War must be the last resort. 3) War must be declared and carried out by proper authority. 3) The final objective must always be peace. 4) War must be carried out by right intention. 5) There must be a reasonable hope for victory. 6) Proportionality means that the good toward which the war aims is proportional to the evil that the war will cause, meaning that the advantages from the outcome of war should exceed the disadvantages. 7) The objectives of war must be limited.

Jus in Bello states that; 1) Discrimination: We must distinguish between noncombatants and combatants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loss of life. 2) Proportionality; There must be proportion between the means and the objective.

There are many realistic ethical problems in applying the Just War Theory. First of all, it would be a complete misuse of the ideology to

succeed in minimizing and limiting the scope and damage of war. Second, with regards to the result of war, a war with the intention of preventing a great evil and securing a better good has the potential to produce an even greater evil through the circularization and continuation of violence. Thir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s excluded from the Just War Theory because the use of nuclear weapon will most likely result in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Therefore, if the authentic aim of war is the restoration of peace, it is necessary to prevent and limit war to every extent possible. So we must work for peace throughout our world and maintain a realistic effort for coexistenc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revent having to implement a case for Just War.

Key Words: Just War Theory, Legitimacy, Just Cause, Last Resort, Circularization of Violence, MAD, Restoration of Peace.

이종원 e-mail: jwlee@ssu.ac.kr